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618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6184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435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소56111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강봉철, 박민건, 박종현, 이재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김광수, 김용운, 남영배, 박천사, 배철욱, 서석우

판결 선고 2022. 10. 27.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43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